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 질의내용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을 양수 받아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9. 7.27. :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자 지위 승계
  - 면허비용 1,000만원 지급
- 2009. 7.30. : 사업자 등록(운수업 - 화물운송업)
- 2009. 7.30. : 신규차량 취득(7,000만원),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대폐차)



###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동조 동항 동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창업으로 인정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8두14838, 2008.10.2. 판결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양수 받았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록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4721, 2009. 10. 9.】**



##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지방세 감면여부



### 질의내용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주체에게서 환매조건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가 환매권 행사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다시 귀속된 미분양주택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 주택이 지방세 감면대상 인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주체로부터 환매조건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대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주체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약정 해제되어 소유권이 다시 본래의 사업주체에게 귀속되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 가목)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사업주체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이 다시 귀속된 미분양주택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초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4168, 2009. 10. 9.】



### 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질의내용

○○도 ○○시 소재 농지 등이 수용되어, ○○광역시 ○○군 소재 농지를 대체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농지를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내에 있는 경우)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위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도와 ○○○광역시 ○○○군(대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정 지역에 해당)의 경우에는 중간에 ○○○도와 ○○○광역시 ○○○구가 각 위치하고 있고, ○○○와 ○○○군은 바다를 경계로 서로 붙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4270, 2009. 10. 9.】

### 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질의내용

비상장법인 B법인에 A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고, A법인은 손자회사인 C법인에



75%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C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마. C법인이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A법인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은 A법인과 50%이상 출자관계(A법인이 75% 출자)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지분비율의 증가분이 없는 이상(100%→100%)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632, 2007.9.7 참조)

**【지방세운영과-4296, 2009. 10. 12.】**



## 5. 조망권 피해보상금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 질의내용

주상복합건물 사업시행 법인이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조망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66억원)하고 당해 신축건물 공사원가에 계상한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라.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 영위법인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는 하나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상에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4295, 2009. 10. 12.】**



## 6.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범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모든 재산"으로 보아 아래 적용기준에 의하여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9.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적용
- ② 2009.9.23.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 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지방세운영과-4307, 2009. 10. 12.】

## 7. 환매가 이루어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 질의내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함)가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환매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매입하였다가 사업주체의 환매권 행사로 인해 당해 미분양주택이 사업주체로 다시 귀속된 상태에서 그 미분양주택을 수분양자가 최초로 취득



하는 경우, 「○○도세 감면조례」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9.2.11까지 : 사업주체(A)가 미분양된 주택 보유
- 2009.5.30. : 대한주택보증에 A소유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일시 취득
- 2009.9.30. : 사업주체(A)가 환매권행사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미분 미분양주택 환매 취득
- 2009.10.9. : 수분양자(B)가 사업주체(A)로부터 미분양주택 최초 취득



### 회신내용

가. 「○○도세 감면조례」 제14조 제5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한주택보증에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거나 당해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환매기간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입법정책상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건설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담보를 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지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판례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회복된 이후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이를 실질적인 최초의 취득자라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3.15. 2006두19686 판결 참조), ③ 실질적인 미분양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여 미분양상태가 해소되었다거나 새로운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매등기가 병행되어 있는 부동산의 환매권 행사 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어 있는 부동산의 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사업주체로 다시 귀속된 주택이, 2009.2.12. 현재 미분양상태이었고 이후 형식상 소유권이 회복될 때까지 미분양상태가 유지된 상태이었다면, 당해 주택을 수분양자가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4410, 2009. 10. 19.】

## 8. 용도 변경 공사중인 교회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 질의내용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중인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타당한지



### 사실관계

- 당해부동산 취득 ('09.2.27)
- 용도변경 신고 ('09.5.4.)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09.7.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당해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바, 직접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것을 의미하나,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직접사용으로 한정하여 법령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까지 건축중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라. 귀문의 경우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4527, 2009. 10. 26.】

## 9.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 질의내용

과세기관의 지방세 부과고지에 따라, '00년부터 '09년까지 매년 지방세를 납부함, 최근, 과세기관의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 민원을 제기하여, '05~'09년까지의 지방세를 환부받았으나, '00~'04년까지의 과오납금은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환부받지 못함

질의1)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2) 환부청구권 시효소멸 된 '00~'04년 과오납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지방세법 제2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와 관련,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과오납인 경우,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 회신내용

#### 질의1)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지방세법 제30조의 5제2항에서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고 정함

- 과세기관의 착오부과로 지방세를 과납한 경우, 과오납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지방세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타당

※ 지방세 해석운용매뉴얼 30의5-3(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 질의2)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징수금의 오납에는,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에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96다 29878, 1996.11.12 선고)할 것이므로

-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질의3)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와의 관계

-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도 과세기관이 시효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변경 및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 이는 해당 과세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세정운영의 안정성, 납세자 권리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555, 2009. 10. 27.】

## 10.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시 감면비율 적용요령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 방법



### 사실관계

(단위 : 억원)

구분	증자일자	증자 자본금		
		총 액	외국인투자 자본금	감면배제자본금(*)
최초투자	2001.08.16.	6	6	-
1차 증자	2003.06.03.	34	34	-
2차 증자	2004.05.13.	60	60	-
3차 증자	2006.05.29.	200	200	200
합계		300	300	200



###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재국조-93, 2004.2.13. 및 서면2팀-260, 2004.2.23.).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전 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 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text{총감면외자}} \times \frac{\text{증자전 외자} + \text{증자시 외자}}{\text{총자본금}}$$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외 지방세를 포함한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방법[감면비율 =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국인투자 자본금 × 감면율)} / 당해 사업연도 총 자본금]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외자의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이, 채무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보다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당초감면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감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지방세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4562, 2009. 10. 28.】



## 11. 주요 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 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 준	변 경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여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전환 이후 취득·등록세 면제 배제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등록세 면제 적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3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 나.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

기 준	변 경
○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 재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	○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유형고정자산” 포함한 모든 재산(재고자산 등)으로 적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 세정운영 기준 : 운영기준 기 통보

-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4307(2009.10.12.)호 참조



다. 서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 존	변 경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 공급하는 주체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공급받는 토지 기준

- 관련법규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비과세

기 존	변 경
○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배제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이혼 전에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비과세 적용 - 다만, 이혼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한 이혼신고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마.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기 존	변 경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배제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적용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보상협의 전에는 토지등수용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하고
  - ② 보상협의를 이루어져 토지등수용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부토록 세정 운영

바. 주거와 겸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추징부과

기 존	변 경
○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 및 가정보육시설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부과	○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와 겸용하는 경우, 해당시설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안방 등)에 대하여는 과세, 보육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거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는 면제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부과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지방세운영과-4588, 2009. 10. 28.】

## 12.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질의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광역철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국가(국토해양부)간에 체결된 협약(제10조)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철도차량 등) 소유권의 귀속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3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고서, 같은 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대금을 납부하고 승계취득한 이후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철도차량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도 취득대금을 납부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460, 2009. 10. 30.】 

